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가(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6.27. 乙이 丙 소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丙은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설계사 甲과 丁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22.6.27.~2022.7.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메가(주)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8.12.11.~2018.12.24. 기간 중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2.26.~2019.6.18. 기간 중 B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68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